

속 기록

- 회의명 : 제40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 : 2025. 10. 31(금) 14:00 ~ 17:32
- 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원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 불참위원 : 김미라 위 원
배은주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제40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팀 권용민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서 현재 8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성기숙 위원님께서도 오고 계신 중이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6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2026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제 운영 방향 등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4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전차회의 결과에 대해서 송시경 사무처장은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406차 회의에서는 의결안건은 없었고요. 보고안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정되어서 모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51호 2026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026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는 2025년에 담론 형성이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26년에 증액되면서 동일 사업안에 신규 유형을 신설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사업은 10억 원이고요.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담론 형성 사업이 2개년 중장기 지원 사업이라서 1억 원을 미리 배정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9억 원에 있어서 3억 원은 아르코예술창작실의 미술관 운영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6년에 별도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 오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은 전체 예산 중 6억 원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신규 유형이 매개·리서치, 창작교류형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목적은 인바운드국제레지던시라는 개념을 확장함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레지던시라고 하면 창작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는 주로 시각예술이나 문학작가들에 해당하는 사업들이었는데요. 레지던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로 체류하면서 국제교류 사업의 협력 형태의 사업들을 하는 것을 총칭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프로젝트 지원을 넘어서 한국에서도 어떤 국제성을 가지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2가지 유형으로 매개·리서치와 창작교류형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개·리서치형은 최대 3,000만 원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창작 교류형은 최대 1억 원으로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개·리서치 사업은 기본적으로 둘 다 국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물리적인 거점 없이 한국 예술가나 단체가 해외의 작가나 기획자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고요. 창작 교류 사업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예술가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시 참가지원에서 조금 많이 소외되어서 저희가 매개·리서치형에 있어서는 워크숍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소외되었던 공연예술 분야까지도 충분히 저희가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성을 가진 사업 중에서 한국에서 3일이나 5일 정도 체류를 하고 축제 등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최소 한 달이라는 체류 기간을 저희가 두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서류 심의를 진행하고요. 매개·리서치는 서류 심의로만 진행하고 창작 교류 사업은 서류 심의와 인터뷰 심의를 최종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공고를 올리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 기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12월 21일에 진행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서 결과 발표는 내년 2월 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앞서서 저희가 추석이 끝나고 저희팀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초안을 통보 드렸고, 개별적으로 구두 보고 드린 경우도 있고 전화로 모든 분과 통화를 해서 주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 7페이지 3억 원이 남은 것을 미술관운영팀에서 별도 공모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술 분야에서 준비해서 공고를 내보내시는 건가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현재 미술관운영팀에서 아코예술창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왕치선 위원 : 저는 장르별로.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시각예술입니다.

왕치선 위원 : 그렇죠. 그게 하나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전화를 주셨을 때 얘기하다가 유아무야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실제로는 공모를 해서 나눠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관리나 평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간이 한 달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이 정말 의미 없이 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제시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제사업이 많은 경우 해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모니터링이나 관리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저희 팀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 업체와 함께 최대한 많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과정 중심으로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에 참여하셨던 심의위원들이나 전문가들로 평가 모니터링 위원을 구성해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우선으로 계속 같이 컨설팅을 하고 중간에 어려운 점을 지금 다져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가급적이면 내년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전수 모니터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하고 중간에 저희 직원이나 제가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은 방법론이나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그러면 결국 평가를 업체에 맡겨서 업체에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 때문에 외부의 용역업체와 같이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팀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고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내용들이 지원신청과 교부신청 사이에도 변동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 변경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와 저희 팀에서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첨언을 드리면, 각 사업에 있어서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총 아이টে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모니터링 자체가 그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관점에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쓰는데요. 사실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 소위원회든 다른 전체회의 등을 보면 어떤 특징이 굵직한 사업이 등장하면, 이 모니터링은 과정 평가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끝나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는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는 성과 평가를 할 때, 제가 얘기할 때는 꼭 양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양적이나 질적인 것을 다 합쳐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왕치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정 평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평가할 때는 내부의 직원이 평가하는 것과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평가한다는 것은 항상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면 수량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계량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질문하신 뜻은 큰 사업이 끝났을 때 기관평가는 아니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위원회 자료들을 보면 용역 평가는 그런 사후평가든 아닌 것 같고요. 자기네 주체에 맞는 것을 용역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외부 평가기관이나 실무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논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훈경 위원 : 왕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하자면,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작품이나 축제라고 하더라도 5~6개 공연을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것이다 보니까 왕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배우는 식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와 평가와 과정을 지켜보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이죠. 그리고 K-컬처 300조 달성을 현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데요. 문체부 장관도 그 부분을 강조점으로 주장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문예위 국제교류팀에서 국제교류 사업이 확장돼서 2026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공모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아르코예술가의 집에서 재미있는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주셔서요. 관심이 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국제교류팀에서 신규사업 공모(안)을 마련하시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겸 의견인데요. 우선 6쪽을 보면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에서 3가지 카테고리 되어 있고 담론 형성에서 이것은 공모 미진행이고 2026년 다년 선정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아르코예술창작산실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시각예술 중심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병은 팀장님의 답변으로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을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적 맥락을 바탕으로, 국제 문화예술계가 주목하는 교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류 거점을 대한민국에서 갖고자 하는, 이것은 공간성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아르코라면 창의적인 정책 발굴 차원에서 아까 담론 얘기도 있었으니까 국제성이 있게 아시아가 주목할 수 있는 주제. 예를 들면 다 같이 시공간적으로 공유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식민성, 근대화 창출의 문제, 아시아 여성의 문제. 그리고 아시아가 갖고 있는 전통 유산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형하고 창조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테마로 해서 단순히 거점, 공간성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아시아가 갖고 있는 공동의 담론이나 유산들을 어떻게 매개해서 같이 연대와 결속으로 지향점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올해는 세팅이 되었으니까 추후에도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향후에는 그렇게 맞춤형으로 가는 것도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쪽을 보시면 평가 심의 기준에서 평가 항목에 해외 파트너 사업수행 역량이 배점으로 40점이거든요. 상당히 이 사업에서 평가 배점으로 보면 높은 비율로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여기에 세부 평가 내용은 되어 있지만 이것의 정밀한 객관적 평가는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객관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심사위원을 추천하면서 유병은 팀장님, 사무처도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국제교류 사업이 확장돼서 심사위원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심사위원 후보단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교류 같은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자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사정이 어떤지는요. 무용 분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무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심의 후보단 구성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전문인력이 조금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8기가 종료되니까 9기 위원들이 구성되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주신 5개 질문 중에서 2개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심의위원 풀은 성기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왕치선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객관적으로도 국제교류를 볼 수 있는 심의위원 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심의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지원신청의 대상자이기도 한 현상들이 있

어서 심의위원 풀이 더 적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의 수행 역량은 위원님께서 심의 기준 40%를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잘려있어서 사업 수행 역량이 40%고 20%는 한국 쪽의 역량이고 20%는 해외 파트너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해외 파트너가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냐는 부분들은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정갑영 위원님, 김진각 위원님, 구문모 위원님께서도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심의 전에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세 분의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공유해서 추가 의견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갑영 위원 : 지금 담론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담론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담론이 아닌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제예술교류를 위한 담론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시해 줘야 할 겁니다. 대부분의 담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술경영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아시아성’ 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식민지, 근대’ 다 있어요. 찾으면 그것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지원한다는 건 차라리 예술 활동이나 제작에 지원한다면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고증 담론을 위해서 돈이 나간다는 것은 낭비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담론, 리서치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 기준 그러니까 심의 기준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부 평가 내용을 보면 사업 자체도 추상성이 강하고 세부 평가 항목도 추상성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팀장께서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행할 역량’이라고 하면 ‘몇 회’라는 국제교류 경험이 있겠죠. 그런 역량 그리고 전문성, 인지도, 관심 제고, 네트워킹, 매개·리서치 역량은 얼핏 보면 다 이해를 할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인지도고 어떤 것들이 관심 제고며 어떤 것들이 네트워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나중에 심의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없이 과정으로 끝난다면, 그런 지원사업은 아마 없지 않나요? “그냥 선정해서 했구나.”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이런 것은 없지 않나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지원신청서 안에 서술 형식이나 장표를 채우는 형식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정성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성을 뉘 수 있도록 심의 전에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을 해소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신 말씀대로 선정이 되었지만 이것들이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가 되며 그것이 어떻게 문

화예술계에 환류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심의 내용들이 정리되면 준비해서 다시 의논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특히 당부드릴 것은 담론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범위와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를 아주 만만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위원님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담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담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심의를 준비하면서, 또 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저는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물로서 창·제작 완성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요. 서로 아시아 각국의 다른 문화적 배경과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술가들이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아카이빙 하는 것.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지원을 수혜 받은 국내, 해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 궁금한 다수가 공유되는 기록물로 남겨져서 가치성이 확대 재생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 컨설팅을 할 때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 평가 내용이 있을 때 전문성이라고 함은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고 공간의 적절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까지는 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오늘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요. 차후 이것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어떤 조건을 어떤 사항을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요. 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그런 계량적인 게 없으면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내용을 받아 주시면 이렇게 선정해서 다시 한번 전체회의 등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진각 위원 : 매개·리서치를 한 번에 묶어서 꼭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리서치가 사실 잘못하면 담론 쪽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개 쪽이라는 게 네트워크 교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리서치는 변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개와 리서치보다는 하나의 매개라는 것으로 묶는 게 사무처의 입장에서도 일하기도 수월하고요. 어차피 매개를 하려면 리서치적인 요소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서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담론이라는 문제와 충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개와 리서치를 하나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저희가 처음에 초안으로 마련했던 게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개·리서치는 공간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창작 교류는 공간 중심으로 뭔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구분해서 진행했는데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워딩을 정리했는데 혹시 조금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52호 2026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계 운영방향(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본 내용은 지난달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지금 몇 가지 사안은 기본규정인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때문에 작년에도 비슷하게 진행된 것처럼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규정 개정을 위원장님께 후속 조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의결된 방향에 따라서 사무처에서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 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담심의사업 2025년 선정사업 대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개선계획(안)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10월에는 추석 전후로 심의위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배포해 드렸고요. 그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7개 사안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참여 여부 결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전담심의위원 그룹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가 2024년 시범운영을 할 때와 2025년 정시공모 때는 2개의 그룹으로 전담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2026년에는 예술인재양성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도약지원 그리고 예비예술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전담심의위원의 제언도 있었고 이번 심의위원 설문조사에서도 이 모두를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전담심의위원 구성 규모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전담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외부인사는 최소 5인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초 규정은 외부인사라는 내용이 없고 심의위원회는 최소 5인에서 20인 내외이기 때문에 최소 5인이 저희 비상임위원과 전담심의관을 포함해서 5인이 되어도 무방한 내용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있어서 최소 5인의 기준을 외부인사가 최소 5인인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내부인사 참여인사를 더 낮추기 위해 비상임위원과 전담심의관은 서로 다른 심의그룹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담심의위원이 문예기금 핵심 사업에 대해서 심의와 평가까지 이어지는, 권한이 굉장히 크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는 되도록 필요시 1명은 유지하더라도 대부분 신규 구성으로 위원님들과 사무처 사업팀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심의위원 설문조사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심의위원 회피 기준 관련 개선(안)입니다.

심의위원 회피 기준 관련해서는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언을 저희가 참고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용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계는 이 심의위원의 회피 대상을 고문이나 자문 등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문, 자문 그리고 용역 등의 계약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해서 거래 관계를 포함해서 회피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 11조 4항 3호의 하단을 보시면 당초 안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을 “사제시간 등 그 밖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전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2025년 전담심의제를 운영할 때도 전담심의위원 섭외 후에 저희 기관 누리집에 명단을 사전에 게시했는데요. 이번에는 명단을 게시하는 것에 더불어서 공개검증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개검증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앙에 제도 운영(안)을 보시면 접수 범위는, 저희가 모든 사항을 무조건으로 접수하게 열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있는 심의 자격 비충족 혹은 심의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주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저희 문예기금 지원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서 접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와 31페이지 참고 3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은 이러한 의견 청취 절차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를 받고자 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 저희가 지금 하단에 저희가 전담심의위원 구성 일정도 같이 제시했는데요. 12월 말에 저희가 결과 발표를 하려면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일로부터 일주일로 접수 기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단의 일정을 보시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전담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고 2주 안에 명단 게시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심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의결되는 방향성에 따라서 당장 월요일부터 각 사업팀에서 위원님들께 전화 연락을 드리고 명단을 요청드리게 될 텐데요. 이 일정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의 참관인 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심의 참관인은 심의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심의장에 입회해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모니터링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2020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고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 방안은 저희 지원심의 옴부즈만으로 참관인을 구성하고 모든 사업에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 1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2차 발표 및 인터뷰 심의 때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실제 이 과정에 심의 운영의 현안이 있었는지도 같이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심의위원 개별 평가점수 공개 시범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심의 결과 발표 시에 심의위원회의 개별 평가점수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도 하단의 저희 지원심의 운영규정(안)을 보시면 당사자가 개별요청 시에는 저희가 본인의 평균 평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불어서 이 개정안은 전담심의제 사업 대상으로 지원 신청자가 요청할 시에는 본인에 한해서 당초에 공개하던 평균 평점 외에 심의위원 평가점수를 추가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선정자, 선정자 모두 이것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3차 심의. 지금 저희가 실연 심의로 3~4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차 심의 최종결과를 발표할 때 선정단체에 한해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균 평점을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시범운영 사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실연 심의 때는 관객평가단 점수가 20% 반영되기 때문에 5명이나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공개 점수 플러스 관객평가단 점수까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더 객관적인 자료로 지원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평가점수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 참여자가 본인 점수가 게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전 안내와 동의 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단의 규정 개정(안)을 보시면, 지금 이것은 시범운영(안)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원 대상 단체의 개별요청 시에만 당사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대상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요. 공개를 하겠다는 것을 사업별 심의 결과 의결 시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받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표기 방식의 오류가 있어서 그 내용도 같이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한국연구재단 행정소송 판례는 지난달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 여부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3가지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1안은 비상임위원님들께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2안은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심의위원 섭외 후보자 추천을 위임한다.” 지금 2안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3안은 현재처럼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심의위원 섭외 후보자 추천에도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운영규정 개정(안)을 보시면 당초 안에서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은 외부인사 외 위원회 비상임위원” 부분을 삭제하고 “사무처 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게 됩니다. 2안으로 의결되는 경우에는 저희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제3조 하단에 전담심의제 구성과 관련된 조항이 3호에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제척된다.” 이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는 저희가 이번 주까지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상임위 주요 질의가 나왔던 부분과 기획조정팀에서 별도로 법률자문을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넣었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요. 8가지인데 우선 앞에서부터 1개 조항씩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심의위원 그룹 확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말씀처럼 논의되어야 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의결안건 제목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2026년 의결안건인데요. 제목이 2026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제 운영 방향(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향이라고 함은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추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의결해서 확정한다고 하면 계획(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계획(안) 같이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구체성이 있습니다. 심의방식도 1안, 2안, 3안 그리고 제척과 기피. 그리고 비상임위원이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의 비교대조표까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회의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방향이라고 해서 의결된 건은 하나도 없었고요. 다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어지만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의 의견이 있어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원래 준비했던 안건은 기본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다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위원님들의 심의 참여에 대한 부분은 의사결정이 안 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으로서 완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방향(안)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향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니요. 문서에 근거해서 오늘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오늘은 논의의 방향성만 정하는 것이고 의결과 확정은 다음 회차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예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제 운영계획(안)으로 의결안건 제목을 바꾸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6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제 운영계획(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의 절차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실 것이고요. 두 번째 전담심의위원 그룹 확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1개 그룹의 전담심의제가 구성되면 그만큼의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이 문제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풀어나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쭙봤고 여러 번 답변을 받았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하나하나 결정이 되면 그다음 단계를 논의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죠?

이훈경 위원 : 예.

김진각 위원 : 논의의 순서가 8번이 결정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조정이 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2번, 3번 순서로 하는 것보다는 8번부터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서승미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비상임위원이 심의제도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앞의 사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서승미 위원 :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일단은 이견이 없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 그것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의 부분들에 대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진각 위원 : 3번의 전담심의위원 구성 규모 확대.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확대는 비상임위원이 참여를 하던 안 하던 확대하는 거잖아요. 만약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먼저, 이견이 많지 않은 부분을 먼저 처리해 놓고 마지막에 그것을 하면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전담심의위원 그룹 확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없으면 전담심의위원 그룹은 3개 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너무 속도감 있게 나가시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18쪽에 청년 분야 전담심의위원 그룹을 별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처의 누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2026년 계획(안)을 보면 창작산실 창작주체,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1그룹이고 2그룹은 공연예술창작산실, 3그룹은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예비예술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 2그룹으로 했던 것을 3그룹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회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2024년에 전담심의적용사업 무용 분야에 다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각 트랙별로 중복. 각 예산이나 참여 예술가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문예위에서 지원하는 전담심의 사업 말고 제가 서울시 지원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연도 보러 다니는데 우리 문예위에서 지원하는 전담심의제 사업과 서울시에서 지원한 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3개 카테고리 나눈 것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심의위원 구성은 내부가 되었던 외부가 되었던, 우리 내부의 전담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이 들어가든 전담심의관이 들어가든 또 외부에서 위촉된 분들이 들어오든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두는 것은 통합적으로 심의를 했을 때 간과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사항이라는 의견을 심의를 했던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일단 전담심의위원회 리뷰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들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는 주체나 산실사업을 심의하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 있어서 현장성이나 전문성이 더 심화된 분들을 모시게 되고요. 다만,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대상으로 심의 할 분들은 이 분들과 조금 결이 다르고 청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이 많은 분을 모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심의위원 설문조사 때도 비슷하게 기술해 주신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그리고 저희가 한 해 동안 평가 모니터링을 운영해 보니까 심의 때도 같은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는 못 드리고 공모 신청접수 결과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는데요. 지금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이 어느 사업보다 가장 접수 건수가 많은데요. 지금 1,567건이 작년엔 접수가 되었고 올해도 1,013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각예술 분야의 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만 시각예술 분야가 259건이고 연극·뮤지컬이 223건, 음악이 237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게 되면 선정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작년처럼 주체나 산실과 같은 그룹으로 진행하는 경우 저희가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심의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평가 모니터링 때 심도 있게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든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경 위원 : 저는 그룹을 나누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만 이미 1,000건이 넘고 거의 다 합치면 청년·예비 쪽이 1,500건 정도가 되는데 다른 분야만 그룹을 섞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심의위원들한테도 무리일 것이고요. 당사자로 수혜를 받는 예술가들도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과연 전문가였을까?” 또는 “청년 예술가와 예비예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왔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전문가가 필요하듯이 이쪽 파트는 조금 더 이 분야만 볼 수 있는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왕치선 위원 : 실은 제가 작년에 전담심의를 하신 선생님들께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거의 풀타임이어야 한다.” 솔직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정도 로드가 될지 모르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인원을 늘리고 그룹을 늘려서라도 이분들을 모실 수 있을지가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지불하는 페이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마음대로 늘리겠다고 해서 늘려질지가 저는 걱정이고요. 실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역할을 하실수록 저희들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장님, 19쪽을 보시면 전담심의위원 그룹 확대라고 해서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내용으로 얘기하신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서승미 위원 : 같은 의견인데요. 현장에서 똑같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게 지속가능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구분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이 그룹보다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3그룹으로 나뉘는 것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성기숙 위원 :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겠고요. 존중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심의의 전문성 문제인데 예컨대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국제적 안목이라든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심의위원 후보단의 확충을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사무처가 이번에 청년예술인을 별도로 했다면 청년예술인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심사위원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위촉할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설문조사 결과 보고라고 방금 사무처에서 자료를 나눠 주셨습니다. 이게 28쪽짜리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참고 사항이라고 아까 지원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설문조사 대상자가 주로 지원 수혜자들로 전담심의회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위주로 설문조사 대상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예기금 심의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 수많은 지원에서 탈락한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한 예술인들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은, 예컨대 2026년 예비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정성이 있다고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현장 의견 수렴의 장이 3번 열렸는데요. 3월과 8월에 2번 그리고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 방식의 개선점도 말씀드렸고 심의 방식 내지는 전담 심의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정시 공모(안)이 발표가 나갔고 10월 30일에 공모가 마감되었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용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불공정성 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수혜자 중심이고 그 수혜자를 선정한 심의위원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대다수의 탈락자, 대다수의 현장예술인, 지원을 하려는 예비지원자들은 여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설문조사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설문조사는 우리가 좌지우지해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이것은 참고사항이니까 참고를 하라는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진행을 해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은 게 너무 과도하게 심사 건수가 많고 전담심의를 하다 보니까 현장 모니터링까지 하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일정 잡는 것조차도 어렵다. 실질적으로 제가 전담심의회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것을 쪽 보니까 참여하기로 했다가 안 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정이 다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다만,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함께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봐 가면서 한다고 하면 제일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도 절대적인 안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게 답이고 이게 오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또 현장에서의 의견들, 이것은 탈락한 사람이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선택해서 접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받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고 해서 그런 설문을 한 것이지 이 설문을 선거에서 투표하듯이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용으로 그냥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 대상 설문조사는 저희 전담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구성된 후보단 700명 중에서 심의 참여 경험이 있는 389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된 것이고요. 지원단체 대상으로 한정된 이유는 실제 전담심의회 핵심이 심의 종료 후 평가 모니터링까지 진행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지원단체가 평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했던 게 컸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해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들 굉장히 적극적이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

신 것처럼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김지영 팀장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잘 되었고 못 되었고를 떠나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다만, 아쉽다면 표본이 작았던 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심사하셨던 선생님 대상으로 한 게 3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좀 표본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후 이 부분은 표본의 숫자를 지원 신청자 대상도 그렇고 심사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상을 늘려가면서 매년이 어려우면 격년으로라도 이런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이것은 그냥 너무 심각해져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3기 때 위원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직원이지요. 지금은 명칭이 전담심의관인데 직원들이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의견이 컸습니다. “비리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직원이 아예 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로 구성해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웃은 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직원 전담심의관들께서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저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발언 총량제가 거론될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든 제도라는 것은 완벽한 게 없죠. 저도 그것은 기본 전제로 인지하고 공감합니다. 어떤 제도든 시작을 하면 그것이 결정적으로 결과 수치에서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나라 속담에 삼 세 번이라는 것도 있어요. 3년 정도는 유지를 해 보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개선하는 게 저는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무용 분야를 예로 들면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되고 전담심의를 참여하기 이전인 000 위원 시절과 제가 전담심의를 참여했을 때 무용 분야는 공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예컨대 공정성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가 중복 다중 지원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문예지원기금이 일부 협회와 단체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중복 다중 지원되는 비율이 약화된거나 고르게 분포되는 게 공정성 담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용 분야는 객관적 수치로 그것이 확인되고 증명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구현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치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제도를 수행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 지원팀이나 공연팀에서 굉장한 노고가 있는 것은 알고요. 또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전담심의 관련해서 시즌2를 논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논의되는 것에 따라서 결과치로 가겠죠. 그러나 저는 이 제도를 한번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제가 전담심의 참여자로서 해 본 경험자로서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담심의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전담심의 설문조사를 왜 하느냐?”,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지?”, “설문조사 항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했다.”라는 분들도 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여기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김지영 지원팀장님께 개별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전담심의관의 문제인데요.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 한 가지씩 하는데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전담심의관 문제는 뒤에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전담심의위원 그룹 확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2개 그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3개 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제가 질문한 게 답변을 안 주셨어요.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 왜 그러세요.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기숙 위원 : 예술인을 심사하는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게 이 의결에 작용이 안 되니까요. 일단 이것을 의결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담심의위원 그룹 확대는 3개 그룹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실 때 각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방향성을 고려해 주신 것을 사업팀에서도 알고 있는데요. 창작주체사업이나 1그룹이나 2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장성이 굉장히 높아야 단체에 대한 이해도나 이해충돌 부분이 많이 고려되지만 3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향후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청년들에 관해서 관심도가 높고 청년 관련 공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해 심의위원 구성을 하고 실제 심의에 오셔서 “나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발언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천하실 때 각 사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될지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음은 전담심의위원 구성 확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심의위원 구성(안)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5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규모를 확대하면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이해하려고 한 번 더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비상임위원 등은 상관없이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서승미 위원 : 3번 항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문구가 여러 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뒤에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인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렇지만 개정(안)이 또 고쳐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외부인사만 확대하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외부인사만 5인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조항.

장미진 위원 :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논의하게 되면 몇 가지 개정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 지금 개정 내용이 외부인사라는 단어를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개정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최소 5인에서 20인으로 하고 그때그때 적용해서 논의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꼭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정병국 위원장 : 이 건 같은 경우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내부인사가 다 한다.” 그러니까 5명으로 했을 때 전담심의관이 들어가고 비상임위원이 들어가는 경우 5명 중에서 2명이 내부인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가 다 한다.” 이런 얘기를 받았습시다.

장미진 위원 : 시행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적될 사항 같지는 않은데요. 포괄적으로 넓게 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개정(안)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제관계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의 세밀한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 저는 좀 낯뜩이 안 돼서요. 규정을 규정하는 게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국회도 아니고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정병국 위원장 : 장미진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다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법도 계속 규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운영을 하니깐 자꾸 요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동의하지는 않는데 계속 지적을 하고 “왜 안 바꾸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장미진 위원님 말씀에 보완되는 건데요. 외부인사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 외에는 동일한 것이죠?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저의 문해력으로 판단을 해 보면, “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 최소 5인에서 20인 내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기에서 끊어져요. “외부인사로 5인에서 20인 내외로” 외부인사로만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외부인사 최소 5인에서 20인 내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면 외부인사로 5인에서 20인으로 구성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게 전담심의 적용 사업만 비상임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면.

정병국 위원장 : 이렇게 이해를 해 보세요. 외부인사 최소 5인에서 20인 내외라고 하면 5명 이상은 외부인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내부인사가 전담심의관과 비상임위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7인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문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해 놓으면 탄력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인원을 구성할 때 최소한 5명 이상을 외부인사로 하니까 내부인사 2명이 들어가면 7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부인사 이외에 비상임위원과 사무처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은”이라고 했잖아요. 주어가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인데 이것은 비상임위원과 사무처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인문지원 사업을 할 때 우리 문화일반 위원분들이 심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 이 규정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못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잘 살려서 문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수탁사업에 대해서 심의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셨던 위원님들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전담심의제를 운영하면서 전담심의제 사업에 한하여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안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전담심의위원 구성 규모 확대(안)은 5조 개정(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의사봉 3타)

이훈경 위원 :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결된 것이고요. 저희가 개정 문구에 보면 8번 결정에 따라서 “비상임위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아마 수정될 것인데요. 추후에 하실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당연히 하죠.

성기숙 위원 : 그러면 5인에서 20인을 ‘외부인사’로 말고 ‘내·외부인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5인에 내부에 3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4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취지가 뭐냐 하면, 외부인사가 5인 이상 무조건 들어오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문구에 의하면, 이것은 의결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담심의제 적용사업 이외에는 우리 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렇게 의결이 작년엔 된 것입니다.

성기숙 위원 : 일반사업에는 위원님들이 인문사업에서 배제된 것처럼 들어갈 수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위원님들이 심의에 참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전담심의 적용사업 외에 굉장히 많잖아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것은 8번할 때 다시 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담심의제 적용사업만 들어갑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심의위원 회피기준 개선(안)입니다. 지금 심의위원 회피기준은 보다 더 구체화 된 내용인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한 문제 제기인데요.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하여튼 간에 이것도 현장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보다 더 구체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현행과 개정의 차이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인가요? “용역 등의 계약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이것 하나 더 들어간 것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밑에 것이요.

서승미 위원 : 저도 그것은 장미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현행만으로도 되지 않나요?

정병국 위원장 : 실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신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사무처에서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릴 때 규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감사 부서에서 권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에 명시해줘야 규정을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조금 더 강하게 권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사무처가 이 개정(안)을 내놓게 된 취지와 의견은 십분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20쪽의 개정안 3번에서 “심의위원 심의 대상 사업 또는 신청 주체와 사제지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입시 심의위원이나 국가유산청 심의 의결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사제지간보다 친인척이 필수적입니다. 친인척 6촌 이내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제지간이라고 했을 때 막연히 예술계는 사제지간이 도제적인 장르도 있어서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심의에 들어갔을 때 기피, 제척을 할 경우 사제지간이라는 내규라도 뭔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제지간이 공적 교육의 틀에서도 있지만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무형유산 전승체계 등에서는 관계성이 굉장히 긴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지를 고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친인척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도 넣을까 고려하다가 친인척 직계 같은 경우는 이미 제척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어 이해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생략해도 권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략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지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심의위원 회피기준 개선(안)은 개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실질 사제지간의 범위를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전담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도입(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검증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연극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접수 범위라고 해서 검증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써 주시

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음부즈만 등을 통하지 않아도 사무처나 기타 협·단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올렸을 때, 특히 연극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에 음부즈만에 사연이 올라오면서 “그게 누가 썼을 것이냐?” 연극계 내부에서 작성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참 민망한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연극계에서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면, 이것은 예시입니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검증할 수 있는 위원단을 따로 둔다거나 협·단체를 통한다거나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도입시키는 것이 어떨까? 공개적으로 이것을 올리는 것은 예술현장에 감정의 골을 만들어내는 갈라치기가 될까봐서 위험하고 염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연극은 아마 협·단체가 굉장히 강해서 그럴 텐데요. 저희 장르 같은 경우 누구에게도 고착되지 않게 움직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소속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절대로 아무데도 안 가서 다른 장르와는 상관없이 음악협회라는 곳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르별로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서승미 위원 : 저희 장르도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후보자 공개검증을 통해서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얘기. 그런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한다고 해도 미리 검증을 하러 간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처럼 전통예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 될까요?

서승미 위원 : 후보자 공개검증의 형태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훈경 위원님은 우려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는 게 많은 의견이거든요.

이훈경 위원 : 방법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떻게 방법일까요?

이훈경 위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마다 특성은 있지만 연극은 협·단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는 검증위원회를 따로 둔다거나 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검증위원회를 따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훈경 위원 :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할 때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이면 이미 10월에 지원사업을 써야 하는 시기인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거의 단체를 끌거나 연출이나 제작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

서 지원사업을 10월에 쓰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개검증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아 떨어지면 그분들은 이미 지원사업을 쓸 수 있는 시기도 놓치고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안 되면 한해의 농사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것을 하려고 들어올 것인가? 심사위원으로 섭외할 때 안 하려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공개검증은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사무처 사업팀에서도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접수 범위를 저희 규정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시면 공개검증 접수 범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있어서 제4조와 제7조에 심의위원으로서 자격 그리고 심의위원 해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안이 아니면 접수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고유직무에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외에 직무 관련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밝혀질 경우 이런 부분이 조금 포괄적이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 방법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명과 연락처까지 저희가 명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제안을 하려고 하고요. 접수 후 처리 절차는 저희가 접수된 이후에 예술인들을 모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심의 옴부즈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하고요. 혹여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이훈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협·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미진 위원 :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명 접수를 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나빠지는 것은 정서적으로 성숙해져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 일방적인 심의위원회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위원회에서라도 기각을 시킬 것이고요. 정말 증빙자료가 타당하다고 했을 때 인용이 돼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자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검증들만 접수를 받겠다고 하면 굳이 왜 공개적으로 해야 할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정병국 위원장 : 요청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공개를 해야죠.

이훈경 위원 :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요청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절반은 긍정하는 부분도 있고 절반은 위험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11월 15일 홈페이지에 전담심의 위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명단을 발표한 것이죠? 거기에서 진일보해서 공개검증 차원까지 가는 것인데요. 아까 류재수 본부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지점도 있지만 위원님들 말씀과 무용계를 보편적으로 봐도 약간 위험한 것도 있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선 여기에 보면 “부적격자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문예위에서 부적격자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 아까 회의자료 30쪽에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4조하고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보조금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한 경우, 미투사건 관련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공개검증 과정으로 신청이 되었을 경우 이것을 과연 문예위가 조사하고 판정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주일간 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진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절대시간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데 이런 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해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하고요. 그러면 예술계의 민간단체한테 이것을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연극협회나 무용협회는 굉장히 고지원 협회입니다. 그리고 문예위의 지정사업으로 지정받는 것도 있고 무용협회 같은 경우에는 최다량, 다건, 중복 그리고 10억 이상 지원 받고 또 지정사업으로 받는 단체인데요. 수혜자 단체한테 이런 것들을 검증하라 말긴다고 하면 이 자체가 문제고 공정하지 않다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사안에 있어서 지적 사항도 있는데요. 그리고 연극 쪽은 말씀하셨지만 음악 쪽은 개별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성은 있지만 방법론에서 추진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일단 이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작년도 결산 국회를 하면서 심사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나온 얘기를 저희들이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서 한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맞는데요. 문제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쪽이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옴부즈만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국가의 의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권리를 해치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개검증’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명단 발표를 하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처리 기준을 만들면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공개검증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명단을 공개하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요. 다만, 이의제기를 받을 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증빙된 자료와 실명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만 이의를 받겠다.” 그리고 그것은 옴부즈만을 하는 팀에서 하겠다고 하면 어

때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전담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는 명단까지만 나간 것이고요. 만약 이러한 공개검증 제도를 우려하는 바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담심의위원회들 명단을 공개하고 2026년부터는 “전담심의위원들의 상시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가동하겠다.”라고 해서 평가 모니터링을 할 때도 가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든지 평가를 가기로 했는데 그냥 안 나오신다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담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그런 피드백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담심의위원들도 “내가 이런 시선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행동을 자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의견 수렴 제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검증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상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개검증이라는 것을 빼고 “명단을 공개하니까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제기를 언제까지 해 달라.”, “다만, 이의제기는 실명으로 하고 증빙된 자료가 있을 때만 접수가 된다.” 이렇게 단서를 잡아놓으면 안 되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게시할 때 ‘공개검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지난해처럼 명단 게시로만 명시해 놓고요. 다만, 내용상으로 명단 하단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안내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어떨까요?

서승미 위원 :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성기숙 위원 : 그 정도가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데 공개검증 제도가 사실 작년에 전담심의위원을 발표하면서 문예위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지자체 지원기관에서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없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지금 동의하신 그 내용으로 가되 판단을 했을 때도,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로서 명예잖아요.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을 때는 당사자가 그 부분의 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화된 지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나중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전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는 명단은 공개하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는 받지만, 근거가 있고 실명으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심의 참관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이게 심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참관만 하는 거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서승미 위원 : 이게 몇 분 정도 더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6인 정도 문의를 드릴 예정이고 실제 참여하실 수 있는 일정 여부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원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에 기재해 놓은 대로 2020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연속적으로 진행은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장관님께서 새로 오시고 9월 예술인간담회를 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 외에 배심원단처럼 일반인이나 타 분야 사람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예술위원회가 아무래도 심의제도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항상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신임 문체부 장관이 예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시간에 건의 사항으로 나왔던 건입니다.

김진각 위원 : 사실 옴부즈만 제도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장관은 일반인이나 타 분야의 사람을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제도를 위한 제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가령 예술위 출신이거나 퇴직자. 아마 이쪽 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성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놔야만, 참관인 제도는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지원심의 옴부즈만 위원을 두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옴부즈만 위원을 참관인으로 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각 위원 :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결국은 심사를 받는데 제3자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래도 심사를 받는 일

장에서는 더 객관적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건의들을 하는 것인데요.

정기숙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체부 새 장관이 취임한 후에 현장 예술인 간담회에서 제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면 이해는 되지만 예술지원 심의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기관에서 하고 있는 공정심의 관련해서 배심원단을 두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저희 전담심의제 심의할 때 정창호 팀장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거든요. “전담심의관으로 사무처 직원이 참관인으로 들어와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그때 불허한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전담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미 세팅이 되었고 갑자기 전담심의관이 들어와서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이 불편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심의를 하는 현장을 혹시나 감시 내지 통제의 의미로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또 하나는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것은 개인정보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술위 입장에서는 보안의 문제도 있는데요. 물론 참관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도 각서 같은 것을 받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포착해 낸 지적 사항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명으로 구성될 것인가? 자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려면 참관인 제도 운영규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필수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체부 차원에서는 시범운영 사례 정도는 예술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문모 위원 : 꼭 우리 예술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의가 들어왔을 때 문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하지 맙시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옥상옥이구요. 저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제도가 전세계에서 최상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당장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6번 심의 참관인 제도 도입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심의위원 개별 평가점수 공개 시범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를 어차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 공개를 하는 의견보다는 저는 공개가 되었을 때 단체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점수를 본 이후 내 점수가 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서가 보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공개를 하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이훈경 위원 : 그것은 안 하죠? 그러면 점수만 공개했을 때 하위 점수를 받은 단체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저희가 심의결과 발표 이후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2년 동안 진행해 왔고요. 혹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더 자세한 피드백을 얻고자 할 때는 상담 과정에 실제 심의위원이 오셔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는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진행해 봤을 때 상담 결과 과정에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 상담을 하는 것을 지원단체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이훈경 위원 :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내 점수가 궁금한 것보다 왜 떨어졌는지가 궁금한 지점이라서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그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들고 간 사람들은 상당히 수고를 하더라고요.

서승미 위원 :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점수가 나오면 제일 좋은 점수와 제일 나쁜 점수를 빼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렇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런 것을 약간 정리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편차가 심해서 심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첫 번째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산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계속해서 점수를 낮게 줘요. 그런 편차까지 고려해서 기본 점수 자체를 정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이 사안과는 조금 다르지만,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는 것도 검토 대

상에 있었는데요. 다른 기관의 사례나 일반 용역 심사에 반영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사례로 봤을 때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려면 적어도 홀수로 5명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점수가 반영되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5명이라는 게 각 세부 분야별 1명씩 들어가는데요. 어느 분야의 해당 위원님이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줬다고 그 점수가 생략되는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안에는 답지를 못 했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최고와 최저점을 빼는 경우는 통상 7명 이상 참여를 하거나, 우리가 5명인데 만약 회피하는 사례까지 있게 되면 그 숫자가 더 작아지거든요.

송시경 사무처장 : 정정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공모 결과가 발표되면 2가지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낙선포럼이라고 하는 컨설팅을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그러면 심의위원과 직원들이 컨설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해 왔고요. 그것은 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물어봤을 때 자기 평균 점수와 전수평가 의견 정도는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수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서 전수평가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한 바가 있다고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저희가 세부적으로 의견이 있다고 했을 때 일부만 조금 정리해서 공개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안으로 올린 배경이 뭐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결위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투명하게 평가점수를 다 공개해야지만 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사 관련해서,

이훈경 위원 : 별도 질문인데요. 심사위원들이 상담하는 창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해 주시는 심사위원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심의비 안에 포함이 되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별도의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혹시나 포함인지 알고 놀랐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지원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 본인의 평균 점수를 확인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 것과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 설명해 줘요. 이렇게 해서 점수 공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없고 다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기숙 위원 :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작년의 경우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요. 전담심의제에 비상임위원 참여와 관련해서 “권력독점이다.”, “불공정이다.”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을 때 제가 정창호 팀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겁니다. 심의위원들 개별점수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른바 점수실명제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정성, 객관성, 대외적인 신뢰도의 문제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일부 직원께서 “획기적이다.”, “혁명적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전향적으로 건별로 전담심의든 아니든 심의위원들의 개별점수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심의하신 위원들이 근거와 팩트와 토대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떨어진 분들도 내 작품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 이유를 알아야 추후에 분발하든가 자기의 예술적 작업에서 새롭게 하나갈 수 있는, 그냥 탈락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탈락이었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전담심의제의 책임성에서 방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건별로 심의위원들의 점수를 투명하게 완전공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현장의 신뢰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담심의위원 구성에서도 이런 책임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이렇게 공개가 되었을 때 나는 자신이 없다.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한번 전향적으로 시도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심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해당 개인 예술가나 해당 단체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의 순위가 이렇다는 식으로 했을 경우 그동안의 경험이 뭐냐 하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이 뭐냐 하면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는 저항성도 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신청서나 결과보고서를 다 공개해 버리면 “내 지식재산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해서 곤욕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장단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부에서 논의할 때 말하자면 결선 같은 경우 공개를 하더라도 점수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결선이 아니고 공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려의 부분이 있어서요. 2안 같은 경우를 보면 결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더라도 단체의 항의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았고요. 말하자면 다 공개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비슷비슷하게 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변별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도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저는 위원이기 전에 극단을 운영하고 공연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점수 전체를 공개하는 게 누구를 위한 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제작자 입장에서 내 점수가 만천하에 공개가 된다. 그것은 너무 날날이 까발려지는 것이어서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게 아니고요.

이훈경 위원 : 아니요.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성적표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단체들이 원할까?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다른 단체가 다 알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제작하는 예술가로서는 제가 담보하는데 90% 이상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여기 개정(안)을 보면 지원 대상인 사람이 개별요청 시에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점수만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니까 “공개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큰 작용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민원을 받고 뭔가를 했다는 의견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도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하시죠?

성기숙 위원 : 여기에서 조금 진일보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전담심의를 했을 때 예술인들과 20분씩 현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어떤 주제와 의도를 가지고 신청했고 어떤 작품을 어떤 구현 방식으로 했고 어떤 미학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밀도 있는 인터뷰를 해 보니까 나중에 탈락하고 나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오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만나는 것은 개별적이잖아요. 그래서 송시경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다 오픈하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한 예술가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담심의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탈락한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소명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은 도움이 돼서 문예위로서는 상당한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도입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심의위원 개별 평가점수 공개 시범운영은 본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때는 “나는 1안”, 또는 “2안”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 주십시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자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각 위원 : 제 의견을 내는 것에 앞서서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던, 26쪽에 몇몇 의원들이 국회에서 심의제도 그리고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와 관련한 여러 질의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국회에서 있었던 얘ियो?

김진각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을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음 달 전체 회의 때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전담심의제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 같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관련 내용입니다.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 분야 비상임위원 선임 과정 및 심의 참여에 있어서 특정 인맥 중심으로 선정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향후 심의위원 추천이나 심의제도의 제척 제도를 강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손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담심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록을 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청이 온 것 중에는 진종오 의원실에서는 전담심의제도 내 비상임위원이 참여했을 때 공정성과 견제 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제도 보완이나 운영기준 개선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의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는 전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 나온 이야기 중에 위원회 비상임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 현재 문예진흥법상 비상임위원의 역할이 심의·의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될 안건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 회의 때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는 이를 벗어났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범위를 검토받기 위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계획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 그리고 의결이고요. 정관에 보면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사무처를 데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심사에 참여하는 부분을 집행으로 볼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심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변호사들은 “그것은 집행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시범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을 정리한다면, 향후 조금 더 완결된 구조로 한다고 하면 법률도 개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의·의결 말고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분으로 간다고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고 어쨌든 법무법인 두 군데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같은 의견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지금 김성범 기획조정팀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국회 지적사항 중에 무용분야 비상임위원인 저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 적시되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임위원 선임 과정은 문체부에서 진행하였고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 사항을 여기에서 일일이 해명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인맥 중심’ 이것은 모 언론사에서 허위 사실로 보도된 바가 있어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심의 청구를 해서 정정 반론보도가 났습니다. 그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이

야기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술 위원님 관련해서 전담심의제 도입 과정 부분은 사무처에서 위촉하는 전담심의관 제도가 공정한가의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손술 위원님이 요구했던 속기록 전문을 저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적된 다른 위원님들의 사항은 11월 전체회의에서 자료 정리를 해서 논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성기숙 위원 : 그리고 법률 자문 검토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읽다가 비상임위원의 집행 영역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해졌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합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전체회의에서 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위원장 책임하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심의를 하는 것도 집행하는 거죠. 집행한 결과를 여기에서 의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건이 사업별로 심의를 해서 올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의결해 주면 그것을 집행하는 게 위임된 위원장이 한다는 내용이라고요.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석해 달라고 해서 요청이 된 것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손술 의원님의 말씀은,

정병국 위원장 : 손술 의원은 제가 직접 질의응답을 한 것이고요. 질의응답을 했을 때 전담심의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책임심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임심의제는 유인촌 장관이 와서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 “전담심의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14차례 현장 업무보고를 통하는 과정속에서 심의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결과에 대한 과정에서 모니터링도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 심사를 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담심의를 해서 평가를 해야지만 단계적 지원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술 의원은 전담심의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한마디만 보태면, 손술 의원은 “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부분과 이 부분을 연관시킨 게 아니냐?”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연관을 시키더라도요. 전담심의제, 책임심의제가 옛날에 있었던 블랙리스트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질문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원본 속기록을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나중에 속기록은 다 열어보면 됩니다.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블랙리스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 블랙리스트를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송시경 처장님이 2024년 10월 회의 직전에 저한테 주신 것도 저는 블랙리스트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집행 관련해서 의문이 뭐냐 하면, 위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심의·의결을 하는 저희가 최고 의결기구로서 심의·의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전체회의를 매년 보면 150페이지, 200페이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30조라든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제가 작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할 때 문화예술진흥법 30조라고 해서 위원의 직무와 역할을 꼭 명시해 놔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30조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선 이해하고 내재화를 해야 심의·의결 사인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집행 영역이라고 함은 전체회의에 와서 서명을 통해서 의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의결을 하는 것이죠.

성기숙 위원 : 지금 말씀은 후자만 해당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보시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심의 과정이나 심의 절차, 심의위원이 어떤지를 다 놓고 최종 결정된 안을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의결이 되어야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의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작년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때 업무편람을 주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성기숙 위원 : 이것을 보면 위원의 의무와 역할의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법률 자문은 그냥 참고 사항인 것이죠?

정병국 위원장 : 법률자문은 참고가 아니라 법대로 집행해야죠.

성기숙 위원 : 법대로 집행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장미진 위원 : 그러면 법률 자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법무법인 (가)와 (나)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되지만 개별적인 활동은

안 된다. 법무법인 (가)는 그렇죠. 개별적인, 독자적인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법무법인(나)의 경우는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의 위원 선정에도 관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보고를 받은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예술위원회의 위원의 역할이라고 해서 기본계획 등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활동, 계획 등이라고 해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게 심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결정하는 것인데요. 역으로 말씀드리어서 주요한 부분들이 예술 현장이나 위원회 사무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의제를 다시 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하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고요.

장미진 위원 : 제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관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송시경 사무처장 : 그래서 저는 법대로 한다고 하면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사무처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법무법인(가)와 법무법인(나)의 해석에서 법무법인(나)는 보다 더 엄격하게 들어와서 해석하는 것 같고요.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다 다르잖아요. 법무법인(가)는 이것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장미진 위원 : (가)도 전체회의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지.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여기에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장미진 위원 :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개별위원이 독자적으로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같아요.

이훈경 위원 :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장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들여다보니 지원사업 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문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지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천을 하면 선정은 그 안에서 돌려서 선정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추천만 하는 것이니까 이 문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송시경 사무처장 :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명예직이고 비상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등기이사로 이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결정하고 논의하시고요.

장미진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비상임위원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고 하는 논리에서 심의위원도 선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정과 추천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심의위원도 정하고 심의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권한이 집중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그냥 단순한 추천이었다.”라면 권한 집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송시경 사무처장 :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말하자면,

장미진 위원 :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요.

송시경 사무처장 :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병국 위원장 :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심의위원 추천은 집행 과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집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갑영 위원 :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집행 과정이라고 봤을 때 독자적으로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는, 집행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가)의 경우에도 이것을 집행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도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왕치선 위원 : 방금전에 사무처장님이 사용하신 단어 하나가 내가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명예직이고 의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명예직이라고 하면 실은 저희가 위원회 내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저 같은 경우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늘 사인을 하라고, 어떨 때는 서면으로 빨리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불안감은 뭐냐 하면, “의결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사인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이것과 별개의 얘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예직이라고 하셨다면 저희한테 의결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직이면 고문 같은 것이지 명예직이 왜 위원회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26조에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집행은 다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으로 있는 위원장님이나 사무처가 결정하신 바를, 예를 들어 지원심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교부하고 모니터링을 할 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모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 의견일 뿐이라서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정갑영 위원 :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 영역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지금 심의위원을 선정한다, 안 한 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에 관여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집행이 아닌가요?

송시경 사무처장 :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으로 보는 건데요. 변호사님은 그렇게 보는 것인 데요.

성기숙 위원 :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나)가 완화된 것이고 (가)가 강화된 것이고요. “지원사업 심의위원 선정이나 직접적인 심의 참여와 같은 ‘집행’의 영역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검토하셨는데요. 그러면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7번까지 논의한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전담심의위원으로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한 것도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주신 업무 편람에 비상임위원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것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과하다고 김성범 팀장님이 메일을 주셨을 때, 제가 사실은 비상 임위원과 위원장님의 해외 출장 관련 문의를 드렸던 것은 국제교류팀 심의위원을 추천해 달 라고 해서 “어떤 분이 적합할까?”해서 참고하려고 의뢰했던 것인데요. 그때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비상임위원의 직무를 보면 “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매뉴얼을 기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된다.”라고 해서 이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우리 김성범 팀장님이 힘겹게 구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두 톱하더라고요. 하나는 200쪽이 되고 하나는 70쪽이 돼서 공부를 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기숙 위원 :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정리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이것에 근거해서 비상임위원의 직무가 다 벗어나는 행위라면 비상임위원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정액으로 저희가 직무수당을 월 90만 원씩 받고 회의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25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사인만 하는 것에 직무 범위가 제한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비상임위원들이 한 달에 정액으로 90만 원을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규정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심의·의결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비상임위원님들이 과정

과 내용도 알아야 되고 집행은 직접 행위하지 않지만 과정도 알아야 되고 필요한 심사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요.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심사하는 게 집행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명예직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사·의결을 성실하게, 정말 여러 가지를 보고 하나하나 따져가겠다고 했을 때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때 절차를 밟아서 하자고 했던 것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오니까 감당이 안 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제약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데요. 다만, 법에 규정한 대로 집행과 심의 의결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를 정리했던 것 같아요.

왕치선 위원 : 위원장님, 저희가 이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께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심사하는 것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서 항상 혼선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것 중에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위원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20년 아르코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위원회로 변하고 나서 위원이란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또 다른 위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서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역할들을 굉장히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모르면 몰랐지만, 이 부분이 우리의 그동안 혼선의 원인인듯 하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저희가 의결을 하든지 사인을 하든지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는 게, 명확하지 않는 한 저희가 모든 행동과 의결은 당분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했다는 게 참 난감하네요.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사무처와 전체 위원님들께 분란을 일으키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사항들은 합의제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 의결을 하시되,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비상임으로서 다시 하는 것은 법에서는 아니라는 견지로 해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의결된 다음에 다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기관처럼 아예 상임이사로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방법이나 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은 합의제인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왕치선 위원 : 실제로는 각각의 이해가 너무 다르고 위원들이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실은 그것이 어느 정도 명확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여태까지 잘못된 것도 문제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나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 여기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은 계신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아마 모르는 몰라도 1년이나 2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실제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혼선과 이해의 차이를 누군가가, 글썄 누군가가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되어야만 저희가 사인을 하든지 의결을 하든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서요. 법률 자문이잖아요. 이게 자문이라는 것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법무법인(가)에서 하고 있는 맨 하단을 보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범위로 한정되며” 그리고 이후의 문구를 보면 “개별 위원이 독자적으로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법 해석에 의한다면 2005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민간자율기구로 갔을 때 자율, 분권, 참여라는 기치가 있었습니다. 개별위원이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민간자율기구로 전환될 때 정병국 위원장님께서 관련된 법 제정의 산과 역할을 하셨고요. 그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김갑수 과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관련된 자료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면 민간자율기구로 전환된 문화예술위원회에 근본적인 존립 근거가 되는 자율, 분권, 참여에 이 부분이 위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검토 (가)와 (나)로 2건을 하셨는데요. 이게 문예위의 법률 자문 로펌에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전담심의 비상임위원 참여의 건으로 문예위 법률 자문 로펌과 한참 통화를 했고 거기에서 문서로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의결권과 관련한 또는 비상임위원회 역할에 있어서 지금 법무법인 (가)와 (나)에서 해석한 것과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해석의 범위가 법률 자문기관마다 다 다르다면 메타 비평처럼 메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병국 위원장 :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가)와 (나)에서 문예위에서 질문한 내용과 법률 검토를 받은 원문자료 좀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법률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행대로 3안대로 간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러저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어떤 단체든 예술인이든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을 걸거나 재판을 걸기 이전에는 저는 법률해석은 우리가 결정하면 결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의 묘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안에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안을 기준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에서의 비상임위원 심의 참여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고 이것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훈경 위원 :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오래 진행된 것 같아서요. 8번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1안에 동의하고요. 저는 애초 이게 도입될 때부터 반대를 했고 위험성을 계속 말씀드렸던 입장이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은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구요. 우리가 애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1년 후에 이야기를 해 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현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설문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게 여러 창구를 통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 해 본 결과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번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서승미 위원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에 대해 1안을 계속 얘기했구요. 아무리 경로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국감에서의 지적들이 1차적으로 위원회의 공정성 신뢰에 크나큰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런 차원의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겠다. 특정 위원, 특정 심의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적인 부분은 이미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고 많은 여론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공정성에서 심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계속 주장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1안 “비상임위원은 심의에 비참여한다.” 이것에 저는 표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 의견을 주시죠.

김진각 위원 : 법률 자문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와 관련한 법률 자문에 대한 결과로 이해했는데 오늘 논의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비상임위원의 역할, 명예직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고요. 사실 어떤 제도든 간에 제도를 새로 시행하면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 제도는 사실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라는 것. 이것은 자문이기지만 법률 자문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이게 보편적으로 순탄하게 가야지만 제도를 계속 할지 말지도 같이 연동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법률과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것을 논의하는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도에 대해 크게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3가지 안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1안, 2안, 3안 중에 한 가지씩 의견을 내는 것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요. 2안의 경우 “비상임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 섭외 후보자 추천은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없으면”이 아니라 “있으면”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위임 방법은 8-1에서 추가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담당 심의위원이 추천할 수가 없으면 다른 위원께 이것을 위임한다는 거죠.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27쪽의 내용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아야 1안, 2안, 3안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것은 그 다음이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그 다음이니까 일단 해 놓고 논의를 합시다. 일단 의견을 다 들어볼게요.

정갑영 위원 : 애초에 전담심의제, 책임심의제의 문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기존에 풀로 있었던 몇백 명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추첨을 하는 제도가 어떤 식이든 간에 타당하지 않아 보였고요. 이전에 있었던 위원들도 그 문제를 인식해서 바꾸는 건데요. 여기에 책임을 더 보태서 책임심의제로 가려다가 해 보지도 않은 제도를 그냥 바꾸면 안 된다고 해서 전담심의제 비슷하게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상임위원이 참여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되어 했던 것 가운데 인원수도 늘리고 외부의 심의위원도 확장된 가운데 비상임위원 1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비상임위원이 원한다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만, 들어가는 경우 비상임위원의 전체심의에서 포션을 줄이기 위해서 후보자 추천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면 비상임위원이 가서 자기 분야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비상임위원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 장르가 발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심의에서 영향력은 크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2번 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저는 감사하게도 정갑영 위원님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생각이 안 났는데 처음 이것을 도입할 때 김미라 위원님인가 차선책을 제시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얘기하려다가 중단되었잖아요. 비상임위원이 들어갔을 때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논의를 안 하고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너무 실랑이를 벌이니까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비상임위원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임위원이 어느 정도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중단한 게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2안에 동의합니다.

왕치선 위원 : 실은 이게 장르별로 개성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을 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은 심사보다 사후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위원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후평가요?

왕치선 위원 : 예. 모니터링이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페이를 안 받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사후평가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다만, 몇 개 간 것은 사무처에 말씀을 안 드리고 티켓을 사서 본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에 굉장히 예민한 장르가 있는가 하면 저희 장르처럼 나중에 공연장에 와서 “내가 심사를 한다.”라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느 장르든 심사에, 어느 장르든 평가 등에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법적인 해석을 받으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실은 다 빠져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취지가 뭐냐 하면, 심사를 하고 나서 아무도 그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누가했는지도 모르고 한번 하고 다 사라지는 사람들 때문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서로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로 “그 장르에서 위상이 없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아마 장르별로도 많이 달라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었던 것은 하지만 다 빠지겠습니다. 심사도 빠지고 사후평가도 빠지고 추천도 빠지고 다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직의 역할로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저는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었고요. 저는 일반분과이기 때문에 심의에 참여하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르 위원들이 왜 이렇게 심의 참여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서 이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몇 개 분야가 들어갔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봐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비난이 없었고 설문조사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비상임위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대의견이 없고요. 그리고 심의가 끝났을 때 외부에서 어떤 협회 등에서 큰 반발을 일으킨 바도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또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도, 이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명예직이라는 말에 저도 확실하게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외부에서도 회의의 눈빛이 강하다면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위원이 될 때 무용 분야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공개검증을 받지 않습니까? 무용 분야의 대표성을 지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되었는데요. 아까 모 위원께서는 국회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실제에 대해서 해명이 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예기금 무용 분야 지원 결과를 언급했는데요. 전담심의에 비상임위원이 무용 분야가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불공정이 더 악화되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용 분야 같은 경우 지표로 나옵니다. 중복지원, 다건지원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었고요. 모 협회, 모 단체에서 6건, 7건, 10억 이상 5~6억이 가던 게 많이 약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용계는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회 심의 참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무용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 수렴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

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에 참여하면 이게 권력 독점이라는 게 지표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 결과치가 공정하나 안 하나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전체회의에 우리가 국회 지적사항을 제한적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 지적사항에서 다른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그러면 앞으로 공정성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예위가 해 나갈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송시경 처장님이 비상임위원을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명예직이라면 비상임위원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응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김성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상임위원이 명예직입니까?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이걸 법조항에 있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님, 송시경 사무처장이 얘기한 것은 개인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문예진흥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진행을 순조롭게 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순조롭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기숙 위원 :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들이 따라붙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제도는 한번 실시하면 그다지 큰 실책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2~3년은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대다수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이 채택된다는 것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괄되게 제가 전담심의를 통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했다는 입장에서 3번으로 의견을 피력 하겠고요. 그리고 이 제도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채택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록에라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2~3개월 있으면 9기 위원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과연 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로서 근본적인 취지에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도 여러 가지 규정, 지침, 정관 부분이 개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 9기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더 합리적인 제안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은 결과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을 한 분만 동의를 하셨고요. 1안과 2안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안 해주신 분이 있어서 아예 표결을 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을 놓고요. 1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나머지 분들은 기권을 하시고요. 그러면 1안으로 비상임위원은 심의에 비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전체적으로 논의된 두 번째 안건번호 제 1152호 2026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회.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7쪽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논의가 필요 없죠.

성기숙 위원 :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구성 절차를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2안이었을 경우예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1안이라서 하지 않지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안건번호 제1152호 2026년 문예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제 운영(안)에 대해서는 본 안 중에서 8번은 1안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기숙 위원 :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의결이 되었으니까 의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요. 1안으로 되었을 때 비상임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위원으로 기존에 전담심의회에 참여한 것이 비상임위원과 전담심의회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임위원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내부직원들이 참여하는, 위원장님이 위촉하는 전담심의회관은 고정값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전담심의회에 참여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계속 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성기숙 위원 :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검증을 받고 전문가로서 들어간 비상임위원은 전담심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배제되고, 사무처 직원이 각 장르의 전담심의회관으로 참여했을 때는 과연 전문성이라 것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공정성=전문성'이라는 부분은 전문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설문조사에도 있다시피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고정값으로 작년에 이어서 참여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 무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3명이 전담심의회관으로 응모했고 무용을 전공한 직원 중에서 정병국 위원장님께서 전담심의회관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 행사에 배우자가 운영위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친인척 6촌 이내 또는 사제지간 등을 했을 때 전담심의회관이라는 것은 사무처 직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한과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과연 공정성을 신뢰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무용 담당 전담심의관의 배우자가 무용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제적을 했다고 보고 받았고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2차 공모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2025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2차 공모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에서는 맨 아래쪽에 1차 결과를 7월에 발표한 이후 공모 접수를 8월 8일까지 15일간 받았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아시는 바로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경우 기초공연예술분야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되었고요.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최대 90%, 즉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최대 1,500만 원 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56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듯이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의 마지막 합계가 566건이 오기되어 있습니다. 100%가 566건이고요. 음악 분야가 76.5%로 가장 높고요. 특히 음악의 개인 분야가 53.9%로 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약 85대 15%고요. 지원심의 방법은 1차와 마찬가지로 지원신청 사업의 지원 적격성입니다. 그리고 대관료 적정성과 증빙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세부 평가 내용은 이 표 안의 내용으로 같음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특히 이번에도 중복배제 즉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의 여부가 되게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결격 심의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선정 결과는 총 385건이 되었습니다. 566건 중에 385건이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선정률은 약 68%고요. 566건의 지원신청액 대비 결정액은 약 55.6%가 되겠습니다. 181건의 행정 결격이 있었는데 가장 많았던 것은 역시 중복수혜의 건이었습니다. 58건이 있었고요. 그 외에 필수 제출자료 누락과 비전문예술단체 그다음에 예술활동증명 미제출 건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양한 건수로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5페이지 제일 밑의 참고 비교는 저희는 2022년도 대관료 복원이 되기 전 마지막 사업을 했을 때 동일기간 비교인데요. 저희가 예산 대비 선정 건수와 평균 지원액이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566건 중에 181건의 결격이 생기고 나머지 건에 대한 전체 지원신청액과 결정액 대비에서는 저희가 98.6% 그러니까 100% 신청했을 때 약 1.4% 정도만 부족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지원신청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결정 금액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분야별 선정 현황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원 건수가 있고 결격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에 따른 선정 건수 그리고 지원 총액 그리고 각각 저희 장르별로 지원 결정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음악이 65%, 연극/뮤지컬이 3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는 단체/개인별 선정 현황인데요. 음악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

에서는 개인이 거의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음악 분야가 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야별 평균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극/뮤지컬이 건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평균 539만 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11월 5일에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발표된 이후에는 계획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차로 공연이 이루어질 때마다 완료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기공연된 공연이 아니라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포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공연 여부 확인을 통해서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붙임자료에 ‘가’, ‘부’가 있고 ‘부’에는 해당 단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연을 해야 되는 기관별로 접수 현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 현황이 지난번보다 많았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차보다 신청이 많은지 여부요?

이훈경 위원 : 예.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35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2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차 때 지원신청 현황이고 건수입니다. 그래서 963건대 566건.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3분의 1과 3분의 2의 포션으로 했는데요. 이 정도 비율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구문모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과 10월에 2번 회의가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웹진과 연구용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진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독자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를 관찰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조회수 정도만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온라인 회사들이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온라인 회사가 분석할 때는 조회수와 팔로워 수 말고도 웹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회사에 그것을 요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후원 행사 같은 경우도 계속하는 경우는, 아까도 사업 평가라고 할까, 사업실적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일회성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회가 거듭될 수록 3회 이상 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벤트로 예산을 그냥 쓰고 비용 대비 성과가 어떤지? 물론 성과가 실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게 있겠죠. 그러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평가를 한 평가 결과서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를 사실상 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미진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용역이 기업 문화지수 평가가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면 적어도 소위원회에서 1억짜리를 발주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발주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니까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는데요. 1억짜리를 이렇게 한다는 건 곤란하지 않겠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담당 직원을 불러서 보완 조치를 하도록 얘기했지만 1억을 지출하면서도 연구용역의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이것이야 말로 낭비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명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런 연구프로젝트가 어떻게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는데 나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이것은 저희 정책연구파트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 팀에서 직접.

정병국 위원장 : 해당 팀에서 했더라도 해당 소위가 있는데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고 발주를 한다는 게 정리되어야죠. 소위를 왜 뒤요?

정갑영 위원 : 작년에도 똑같은 건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랬죠.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장 어떻게 된 건가요? 해당 소위가 없으면 모르지만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된 사항을 왜 발주해요?

정갑영 위원 : 전체회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이 부분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담당 간사 부서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내용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게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위원장께서 이것은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나는 당연히 내가 결재할 때는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받아들여서 결재를

한 것이죠. 저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해당팀은 해당 팀대로 일을 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소위원회를 왜 뒀어요?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제가 물을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결의서를 받고 감사를 하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송시경 사무처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안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를 하고 외부 프로젝트 연구용역이 나간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4차 회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구문모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예.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은 아르코웹진에 관한 것인데요. 웹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김진각 위원님과 제가 웹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웹진을 쓸 때 각 장르별 위원들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비상임위원 코너 같은 것을 마련해서 각 장르위원들 중에 이슈로 얘기한 것들, 그동안 활동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채택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술 후원인의 밤인데요. 어제도 서울우선에서 참여했지만 제가 쪽 관찰했는데 후원하는 세대가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후원회 액수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후원을 모으고 후원을 제대로 쓰는 시스템을 정제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위원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를 우리가 두게 된 것도 정부 예산에만 의존할 단계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후원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더 생태계 변화를 꾀야 한다는 의미에서 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후원할 수 있는 영역들을, 예를 들어서 자선 골프대회나 음악회, 경매 등을 많이 발굴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주세요. 평가를 해 주시고 향후 그렇게 모금된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예산을 가지고만 하기에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평가해 주시고요. 향후 후원금을 어떤 체계를 통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원자들의 층도 다양해지고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중심에서 젊은 사람들로 확 바뀌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후원회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해 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시간이 되면 어제 후원회 밤 같은 경우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네요.

이훈경 위원 : 어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승미 위원님과도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이해를 좀 못한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50만 원 정도가 되는 티켓이더라고요.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오시면 되는 거죠.

이훈경 위원 :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서승미 위원님과 “그렇게라도 가야하나?”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가고 싶기는 한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저희가 티켓팅을 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 후원하셨던 분들. 또 옥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내부 위원님들은 오셔서 모니터도 해 주시고요. 보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오면 좋겠다. 주변에서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도 좋고요.

이훈경 위원 : 반성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여쭙보지 못했네요.

정병국 위원장 : 음악회도 3~4회 했는데 좋았잖아요.

구문모 위원 :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가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작품을 내놓나? 작가냐 갤러리냐? 그것도 갤러리들이 많다. 그러면 후원금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후원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제 생각에 이훈경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후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냥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후원이 그냥 서류상으로 후원하고 현장에서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많이 와닿는 게 달라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냥 후원금을 내달라는 것과 우리가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내가 여기에 참여하니까 자존감도 생기고 너무 좋다. 돈을 내고 싶다. 공식적으로 옥션을 한 것은 두 번째인데 작년보다 훨씬 개선된 행사더라고요. 실무진들이 몇 번을 해 보니까 틀이 잡혀서 굉장히 좋은, 왔다가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다음에 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정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예술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씩 연결시켜 주니까 지속 가능하고 오던 사람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은 경영전략소위원회 4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예. 이번 회의 때 중장기 경영전략 관련한 개선(안)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수정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제들이 있어서 일단 11월로 미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목표나 전략 과제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데 필요한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정과제와 새정부 문화정책 기조를 가급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무처 임직원들의 의견들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또 경영평가도 염두에 두고 전략안을 다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은 4대 전략목표 14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전략과제를 2개 정도 늘리는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정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최종(안)은 합의가 된 상황이고 다음 달에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8기가 다 끝나가잖아요. 8기 동안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었고요. 향후 9기가 이런 부분은 계승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안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새 정부도 들어왔고 국정 방향과 결부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지속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들을, 이게 언제든지 보면 그냥 인수인계가 모든 기관이 다 그렇고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고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 8기가 들어와서 또 제가 위원장으로 집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해 왔는데 된 것은 어떤 부분이고 안 된 것은 어떻게 안 되었고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8기의 의견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훈경 위원 :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을 해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이훈경 위원 :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8기 위원회가 몇 달 안 남아서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의견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번에 청년예술가도약 쪽에 전담심의관이 구성되고 외부인사가 최소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게 정리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의 부족이 계속 걱정되

고 염려가 됩니다. 물론 외부 심사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풀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열려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며 풀 인원을 충원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간절해서요.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담심의위원이 모니터링까지 하면서 계속 들리는 얘기가 예산 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담심의위원들이 거의 본인들의 직업을 뒤로 미루고 심사와 모니터링 평가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턱 없이 적은 예산이 쥐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와 결부되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예산이 조금 더 확보돼서 그들이 정말 책임감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심사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전제를 깔자면 제가 현장 예술가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몰라서 드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3인의 국회의원들과 4번에 걸쳐서 비상임위원 또는 전담심의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상당한 자긍심과 책임감 나름의 저 스스로 뿌듯함 가지고 3년을 지내왔는데요. 이게 문예위의 명예 실추가 되는 안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뭔가 행보를 할 수는 없지만 문예위 차원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라던가 또는 문체부가 진행하겠지만 건의 사항 정도는 올려줘야 하는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외부에서 보여지는 문예위의 위상이지 않을까 하는 아주 부족하지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충원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정 부족하면 외부인사도 충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밝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실무진과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잘못된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반론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 감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셉트(accept)가 되었다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받아서 바뀌야 될 부분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국회의원을 20년 동안 했지만 제가 피감자로서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듣지만 국정감사는 정말 중요하다.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아마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자괴감도 느꼈지만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 생각만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지적해줘서 우리가 변경도 하고 보완도 하며 바꾸면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좀 지나간 얘기지만 아까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에 참여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유감스러운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무처장께서 명예직이라는 얘기를 해서 임팩트가 저한테는 좀 컸어요. “내가 선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늘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어요. 이 정도 하면 너무 관여를 하는 것 같고 약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넌 뭐하고 있느냐?”라는 게 제 마음속에서 울리고요. 그러면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고

민했는데요. 명예직이라고 하니까 “가만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무처장님의 얘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관에 있다고 인용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비상임위원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앞서서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성기숙 위원님께서 단순 명예직이라면 내가 섭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할게요.

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위원들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을 한다.”, “위원회 운영계획 및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한다.”,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한다.”, “위원회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여한다.”,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것을 관여한다.” 이것은 단순 명예가 아니거든요. 단지 규정에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한 것인데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결정사항에서 그 말씀을 하게 되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구문모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명예직이라는 의미는 2가지가 있다고 평상시에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심의.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장님 되었고요. 정리를 해 주세요. 사무처장이 그것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요. 저도 그것을 보기에는 법규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명예직이라고 규정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봐요. 내가 있을 때 저 법규를 만든 것 같은데요. 왜 저것을 캐치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직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차라리 어떤 기관은 이사면서 집행 쪽의 본부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무처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라리 법을 바꿔서라도 이사도 하시면서 수행도 하시는 방법까지도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쨌든 간에 오늘 논의하는 과정속에서 사무처장이 예를 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이라든지 위상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과의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다만, 저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성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흥원을 위원회로 바꾼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가능하면 반영하고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 최대한 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심의·의결을 하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거나 필요한 사무처 직원들의 서포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포트를 해 드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소위원회의 역할도, 그러니까 상시 전체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만들어졌으

면 전체회의에 준하는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소관인 것을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번 건은 철저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정책팀에서 생태계 연구를 장르별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차를 마치고 올해 2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각 장르마다 현장에서의 온도차는 다르지만 저희 쪽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인원이 6개월 이상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르를 포함해서 12월이든 마무리를 짓는 전체장이 하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떤 방식을 말하시나요?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서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정병국 위원장 :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가능하시다면 각 장르별로 그동안 해 오지 않던 생태계 조사도 해 왔고 연구를 해 왔는데요. 8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으면 사무처와 협의해서 적절한 날을 정해서 같이 발표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명예직이라고 하셔서 “모든 의결에서 빠지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혼자 생각한 것 중에 3인이 1안에 찬성하셨고 2인이 2안에 찬성을 하셨는데요. 의결이 과반수가 안 되었는데도 통과가 되나요?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그냥 다수로 결정한 것은 이게 1개의 안건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묻은 거잖아요. 8개 안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적의 안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의결을 붙인 것은 두 번째 안건 전체를 붙인거죠. 그러니까 사안별 안건이 아니고 통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왕치선 위원 : 궁금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은 엄격하게 말씀하시면 과반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사안별로 건건이 물어서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으로 의결을 한 측면입니다. 만약 우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면 통으로 물었어야 하는 거죠.

왕치선 위원 :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뒤끝이 겁니다. 아까 그

문제는 그동안 위원회 위원들끼리 얼굴을 붉히면서 거의 싸움에 가깝게 했던 것들의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서로 달랐고 그것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달랐고요. 어쨌든 사무처장님께서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십년을 계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그 말을 그 한마디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가 겪었던 “직원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라고 했을 때의 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위원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분은 학습하고 알아보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시기 전에 그 부분을 고쳐주시고 나가주시지 않는 한은,

정병국 위원장 : 법이잖아요. 법안입니다. 문예진흥법이죠. 문화예술진흥법이라 법을 고쳐야 하는데 저희들이 국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오시는 분들의 혼선은 계속 빚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우선 왕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정비해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무산되었고요. 제가 1년 정도 해 보니까 여전히 오늘의 결론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존립 근거, 의무와 역할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을 재·개정하는 작업이 향후 9기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결정족수 과반수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물론 저도 제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궁금한 것은 25쪽을 보면 1안으로 우리가 결정되었잖아요. 비상임위원은 심의에 비참여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전담심의제 위원 추천은 누가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해당 위원님이 하시는 거죠.

성기숙 위원 : 위원하고 사무처하고 1.5배수로,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기존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아까 국감 이야기가 있었는데 11월에 종합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재논의를 한다는 기획조정팀장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왜곡된 부분이 많고요.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고요.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에 참여하게 된 것도 작년에 위원님들 의결을 통해서 한 겁니다. 제가 독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성기숙 위원 : 그다음에 전담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저는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고 그것이 결과치로 나왔기 때문에 무용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또 2026년 정시공모(안)에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무용계의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10월 22일 문예위 상대로 국정감사 때 임오경 의원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2가지였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고갈 문제가 문제다.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국회에서 문예진흥기금 고갈 위기 내지는 재정건전성 주제로 세미나도 있었고 제가 참여도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향후 8기에서 9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문화예술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기금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같이 세미나도 하였고 보고도 드렸고요. 지금 제가 국회에서 보고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현재 다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문화예술분야에 부가가치세를 무는 분야가 있고 면제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사업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아직도 무는 분야는 상업적인 분야죠. 그런 데에서 부가가치세로 1년에 거치는 게 약 1,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목적세로 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것은 기재부에서도 일반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문예진흥기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목적세로 하게 되면 이런 논란도 벗어날 수도 있고요. 제가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어서 국정감사 때 제가 위원들에게, 특히 여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이것을 바꿔보려고 기재위원회로 넘어가서 2년을 넘게 싸워봤어요. 그런데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기재위에 있는 의원들과 문화 쪽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 했어요. 장관 때는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300조 내수시장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있고요. 절대적 다수 의원을 여당이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의 뜻을 당신들이 받든다고 하면 이것을 꼭 해달라고 제가 일부러 발언 기회를 얻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쉽고요.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니까 목적세로 하게 되면 이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생각도 깊다, 그러니까 많이 반영해 준다고 좋은 이미지일 테니까 꼭 해 달라. 제가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장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마 다음 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위원장님께서 드렸더니 문체위의 김교홍 위원장님 이하 여당의 임오경 의원님과 김승수 의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성기숙 위원 :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직간접적으로 비상임위원들도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을 공유해야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담심의회가 1안으로 결정되었으니까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국감에서 조은희 의원님이 불공정 편파 지원 특정 단체에 대한 부분이 브니엘 예고 사건과 연동해서 아주 심각하게 거론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예위가 향후 공정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 지원금의 공정한 시스템, 지원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게 숙제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예진흥기금 2026년도에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고 동떨어졌을 때는 문예위의 신뢰, 비상임위원의 신뢰가 아니라 전체 문화예술위원회 신뢰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우리가 같이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2025년 11월 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제 40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회의종료)